

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0. 11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1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2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10.28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박노선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,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수수료감면대상을 『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』 제8조 (수수료의 감면등)에 반영하고, 전자파일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수수료를 조례 제3조(요율) 【별표2】 의 정보공개수수료에 추가

나. 주요골자

-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유 추가
 - ▷ 안 제8조 제2항 1호
-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.
 - ▷ 안 제8조 제3항 신설
- 전자파일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수수료 추가명시
 - ▷ 현행 제3조(요율)의 【별표2】

3. 관련법규
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. 1. 29 개정 됨에 따라 전자파일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추가하고(조례 제3조 별표 2.) 현재 비영리단체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직원도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던 것을 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감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겠끔 문항을 삽입 하려는 것과
- 이때 그 비용을 감면 받기위해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
- 제3조 별표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표에 전자파일의 열람신청과 전자파일의 사본 복재물에 관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일반문서의 열람, 복재 수수료와 거의 같으므로 무리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
- 제8조의 문구수정 및 신설조항 또한 동법 시행령개정 취지와같이 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